

육아정책 Brief

통권 제 03호 | 발행인: 이영 | 발행일: 2012년 05월 01일 | 발행처: 육아정책연구소

05 May

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아동권리, 보장되어야 한다.

I. 배경

영유아는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, 안전한 보호조치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.

- 영유아는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, 안전한 보호조치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.
 - ▶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, 2010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00건에 달함.
- 정부는 2010년 12월 「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」을 발표하고, 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해 왔음.
- 본 연구소에서는 16개 시·도 지역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각각 1,033명, 1,048명과 유치원 원장과 교사 각각 1,033명, 1,040명, 총 4,15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¹⁾의 아동권리 인식과 이행 수준 등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권리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.

II. 주요 결과

‘유엔아동권리협약’에 대해 ‘들어본 적 없다’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약 25% 수준에 달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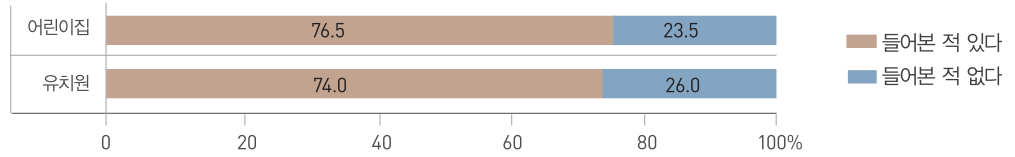
1. 아동권리 인식 수준

-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이 아동권리 인식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‘유엔아동권리협약²⁾’에 대해서조차 ‘들어본 적 없다’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3.5%와 26.0%로 평균 약 25% 수준에 달함.

1) 이하 ‘교직원’은 해당 기관 원장과 교사에 한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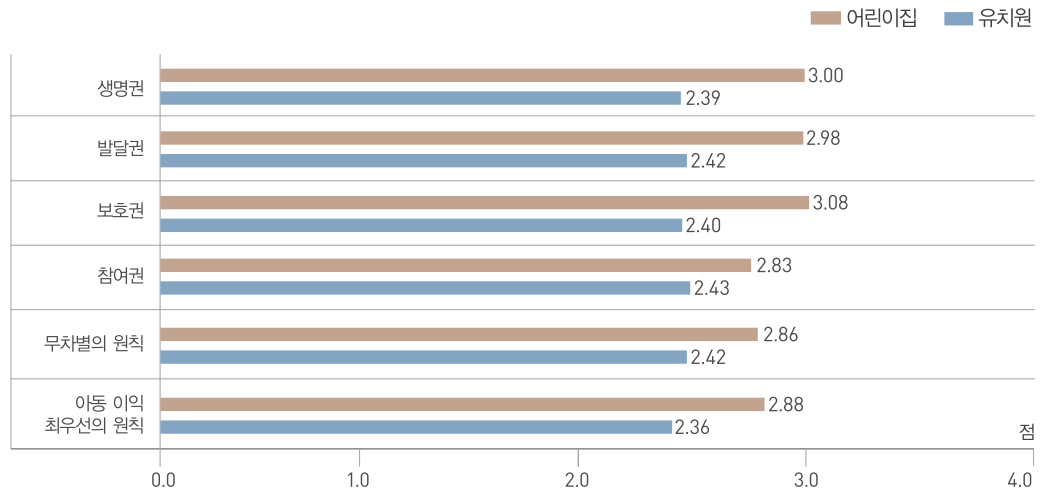
2) 우리나라는 아동권리 협약당사국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해야 함.





[그림 1]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여부

- ▶ 기관 유형별로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(각각 28.0%, 27.6%)과 사립유치원(29.9%)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미인지율이 이외 기관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, 아동권리의 주요 원칙에 대한 이해도는 내용을 알고 있는 수준임.
 - ▶ 어린이집의 경우, 생명권, 발달권, 보호권의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, 참여권³⁾, 무차별의 원칙,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.
 - ▶ 유치원의 경우, 아동권리의 각 원칙에 대한 이해도는 유사하게 나타남.



주 : 1) 평균은 '전혀 모르다' 1점, '들어본 적 있다' 2점, '내용을 알고 있다' 3점, '내용을 잘 알고 적용하고 있다' 4점으로 변환하여 4점 척도로 계산한 값임.
 2) 생명권, 발달권, 보호권은 중첩된 개념이나, 조사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기 질문함.

[그림 2]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주요 원칙의 이해도

- ▶ 가장 이행하기 어려운 아동권리 주요 원칙으로는 양기관 교직원 모두 참여권을 지적하였음.
- 「아동복지법」 제26조에 의거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식 수준이 미흡함.
 - ▶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'매우 그렇다'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약 52%로 나타남.

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인식하는 비율은 평균 약 52%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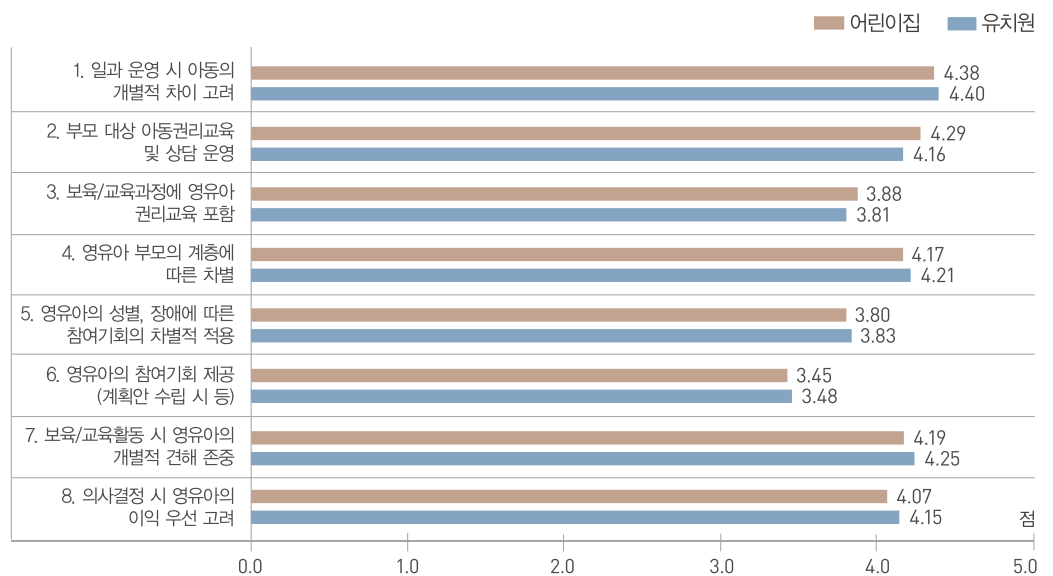
3)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

- ▶아동에게 학대로 추정되는 징후(상처, 멍 등)가 발견되면 '즉시 신고하겠다' 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약 40%로 나타남.

2. 아동권리 이행 수준과 애로사항

-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의 영유아 보육·교육 시 아동권리 이행 수준을 8가지 문항으로 살펴본 결과,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하게 5점 만점에 평균 4.03점으로 나타남.
 - ▶ 문항별로 살펴보면, 프로그램 운영 시에 영유아의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한다는 항목이 4.38점과 4.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, 보육·교육계획 수립 시 등에 영유아의 요청을 받아 참여시킨다는 항목은 각각 3.45점과 3.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.

아동권리 이행에서 아동의 개별성은 존중되는 편이나, 아동이 개별 의사를 표명할 권리, 즉 참여권은 상대적으로 간과됨.



주: 평균은 '전혀 그렇지 않다' 1점, '그렇지 않다' 2점, '보통이다' 3점, '그렇다' 4점, '매우 그렇다' 5점으로 변환하여(4, 5번은 역코딩) 계산한 값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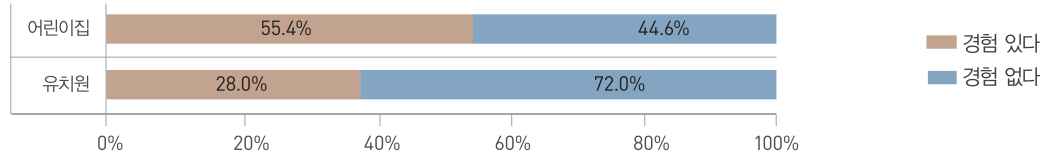
[그림 3] 보육·교육 시 아동권리 이행 수준

- ▶ 기관 유형별 아동권리 이행 수준은 국공립·법인어린이집과 직장·법인외어린이집이 각각 4.09점, 공립유치원이 4.05점으로 다른 기관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아동권리 보장 시의 주된 애로사항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, 보육교직원의 경우 교사의 업무 과중(69%), 유치원 교직원은 프로그램 부족(50.5%)을 가장 많이 지적함.

3. 권리교육 경험

아동권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직원은 전체 응답자의 약 42%에 불과하며 해당 교육 내용은 학대 예방 위주임.

-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 중 아동권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직원은 전체 응답자의 약 42%에 불과함.
 - ▶ 아동권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4.9%에 달하나, 해당 교육 유경험율은 보육 교직원 55.4%, 유치원 교직원 28.0%임.



[그림 4] 아동권리 교육 경험 여부

- 아동권리 교육을 받은 기관으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수교육과 승급교육기관이 62.0%로 가장 높고, 유치원의 경우는 교사양성교육기관이 약 40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.
 - ▶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교직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 비율은 어린이집은 43.1%, 유치원은 27.9%에 불과함. 기관 유형별 실시율은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이 47.0%로 가장 높고,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 32.0%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아동권리 교육을 위한 교직원 대상 교육내용은 학대 예방 위주임.
 - ▶ 교육내용 중 학대 예방(성폭력 예방)은 어린이집의 경우 91.8%, 유치원의 경우 82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다음으로는 보육·교육 활동 시 아동권리 존중,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 순으로 나타남.

Ⅲ. 제언

교사양성과정과 직무교육 시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하고, 참여권 실천 사례 중심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며, 전문강사진 양성과 보조인력 강화가 요구됨.

- 교사양성교육과정과 직무교육 시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함.
 - ▶ 교사양성교육기관에서의 아동권리 교육 유경험율은 평균 약 34%에 불과하며, 현행 보수교육과정에 의하면, ‘아동학대와 아동권리의 이해’는 2~4시간에 불과하므로 해당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 - ▶ 교육 내용으로 아동권리 존중 보육·교육 실천을 포함하며, 교육 방법으로 참여권 실현을 포괄하도록 사례 중심, 교사참여 방식 등을 적용함.
 - ▶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조항 신설에 따라,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조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 있음.
- 아동권리 주요 원칙 중 이행하기 가장 어렵다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행 수준도 가장 낮은 참여권에 대해서는 실천 사례 중심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함.
- 아동권리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교사양성교육과정과 승급과정의 강사로 활용함. 나아가 교사들이 이들로부터 보육·교육 활동 시 아동권리 보장에 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함.
- 교사들이 일과 중에 아동의 개별 의사를 보다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지원을 강화함.

유해미 부연구위원 nowyoo@kicce.re.kr